

2022년도 제2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2. 3. 24.(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2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55건(안건번호 제2022-13009호 ~1348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11044호는 ○○○○○ 블로그에 불법복제물의 임베디드 링크를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불 때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 안건번호 제2022-11045호~11048호는 ★★★ 블로그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들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가결함.
 - 안건번호 제2022-11049호~11597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869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29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2-2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0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755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2022-11044호~11597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11044호는 민원인(실명 1명)이 신고한 사안으로, ○○○○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의 임베디드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에서 방송 ‘◇◇◇◇ ◇◇ ◇◇ ◇◇◇◇’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총 1개 게시물임.

(안건번호 제2022-11044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한 화 전체를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제공하는 임베디드 링크가 있는 원천게시물은 ★★★ 블로그로 ○○○○와 ★★★ 블로그 운영자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점,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2-1104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순번 1번과 순번 2번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부탁함.
- 오진해 전문위원: 순번 2번이 원천게시물이며, 순번 1번이 이를 임베디드 링크 형식으로 게시하고 있는 링크게시물임. 2번과 같이 국내 서버에 원천게시물이 있는 경우 원천게시물에 바로 시정권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 순번 1번에도 독립적인 시정권고의 이익이 있다는 것임.
- E 위원: 원천게시물이 삭제되더라도 임베디드 링크된 영상이 계속

재생될 수 있다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동영상에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 삭제된 게시물을 통하여 해당 동영상에 접근할 수는 없지만, 이미 동영상 링크가 다른 게시물에 존재하는 경우 해당 링크를 통해 동영상에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음. 게시물만 삭제되고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은 따로 삭제하지 않으면 그대로 동영상 서버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
- A 위원: 게시물을 삭제하여도 동영상은 완전히 삭제되는 게 아니어서, 링크를 걸어둔 다른 게시물에서는 계속 접근 가능하다는 것임. 그러면 원천게시물인 순번 2번에 대해서만 시정권고하고 링크게시물인 순번 1번에 대해서 시정권고하지 않으면 순번 1번에서는 계속 침해 저작물이 전송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됨.
- C 위원: 우리가 순번 2번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여 전송이 중단되었는데도 임베디드 링크를 게시한 순번 1번 게시물에서 침해 저작물이 재생된다면, 순번 2번은 무엇을 삭제하였다고 보아야 하는가?
- A 위원: URL이 지칭하는 해당 페이지는 전체 삭제가 되며 동영상은 블로그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지만 내부 서버에는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임.
- C 위원: 순번 1번에 임베디드 링크된 원천게시물은 ★★★의 비디오 서버에서 전송되고 있는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 A 위원: Notice & Take down 절차에서는 권리자가 삭제를 요청한다 하여도 OSP가 곧바로 영구적인 게시중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서 counter notice가 오면 다시 복구를 해 주어야 함. 이러한 구조를 생각하면 게시물이 남아 있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됨. 우리 시정권고의 경우 게시물 내 콘텐츠가 어떻게 삭제되는지에 대하여 OSP에 직접 질의하여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임.
- 오진해 전문위원: 추후 질의해보도록 하겠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2-11044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11044호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2-11045호~11048호는 민원인(실명 2명)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서 영상 저작물을 스트리밍 형태로 게시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 블로그에서 방송 ‘◇◇◇◇ ◇◇◇◇◇◇◇◇◇◇’와 ‘■■■■ ■■■■’ 등을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총 17개 게시물임.

(안전번호 제2022-11047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한 회차 분량 전체를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C, D, E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11045호~11048호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제2022-11049호~11597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

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방송 ‘(방송)쵸쵸의 기묘한 모험(2012) [긴급]’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11098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방송)쵸쵸의 기묘한 모험(2012) [긴급]’을 10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2012. 10. 7.부터 방영중인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넷플릭스에서 서비스 중임.

(영화 ‘(영화)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11163호는 웹하드에서 ‘(영화)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2020)’을 157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2022 1. 12. 개봉한 애회 영화로 시리즈온에서 서비스 중임.

(게임 ‘[중점](게임)시티즈: 스카이라인 Cities: Skylines (All DLC) (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11544호는 웹하드에서 ‘[중점](게임)시티즈: 스카이라인 Cities: Skylines (All DLC) (2020)’을 640포인트에 제공 중임. 2015. 3. 1. 발매한 PC 게임으로 스팀에서 서비스 중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2-11049호~1159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안건번호 제2022-11049호~11597호는 모두 불법 복제된 영화, 방송, 게임,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

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11049호~11597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2-11044호, 제2022-11045호~11048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2-11049호~11597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o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2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2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3. 24.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